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6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08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(안 제1조)

나. 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 개정

-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하는 부칙 개정
- 본청 일반직 5급 △1, 일반직 6급 이하 △2

다.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추진

- 본청 일반직 5급 +1(기구개편), 일반직 6급 이하 +2(현안사업 추진 및 기준인건비 배정인력)
- 총 정원 변동 없음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8. 11. ~ 8. 1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08.1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”로, “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”을 “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 중 “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”를 “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<u>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----- ----- -----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<u>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한시정원 존속기한 개정(부칙개정)
 - 본청 소속 일반직 5급 1명, 일반직 6급 이하 2명 감
 - 본청 소속 일반직 5급 1명, 일반직 6급 이하 2명 증
- ※ 총 정원 1,448명으로 변동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 경미함
 - 직렬·직급 조정(일반직 간호 7급 1명 증, 일반직 사무운영 8급 1명 감)에 따른 의한 인건비 상승분 경미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관리국 총무과 이동열
연 락 처	02-3153-8217